

수신 : 회원제위

참조 :

제목 : 「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」 개정 양식 안내의 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기 안내드린 충북 제497호(2026. 08. 05.) 관련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 및 시행(2026. 08. 11.) 됨에 따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「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」 양식을 개정·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□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

-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의무화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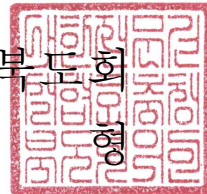
①종전	② 하도급법 개정시행 (2026. 08. 11.)		
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	→	지급보증 면제사유 폐지 ※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발생	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「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」 개정 ※ 제6항 신설 2026. 8. 11.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하는 하도급계약
직불합의 → 지급보증 면제		직불합의 → 지급보증 필요	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 부담

□ 시행일 : 2026. 8. 11.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
계약부터 적용

- 붙임 1. 「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」 개정 양식 1부.
2.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1부. 끝.

※ 협회 홈페이지(<https://chungbuk.kosca.or.kr/>)- 공문, 공지사항 No. 5927참조

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
회 장 류 근 형



담당자 주임 이재한 과장 고민숙 실장 하재중

시행 전건협 충북 제524호 (2026. 8. 12.)

우 2877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6(용암동) 전문건설회관 7층/<https://chungbuk.kosca.or.kr/>

전화 043-294-7671 전송 043-294-7675 / 전자우편 bokil@kosca.or.kr